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등재 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기재 순서 개선(안 제6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함

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 등(안 제6조의2)

- 1) 「외국인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마련('24.11.)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에도 외국인의 한글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2) 외국인 본인 외에도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등이 외국인 기록을 정정·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입신고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3조)

-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강화

- 하고, 기존에 전입신고서와 별도로 작성하던 동의서 서식을 통합함
- 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규정 강화(안 제36조)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급신청서에 직접 지문을 찍도록 함
- 마. 무인민원발급을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47조, 제49조)
-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24.12.27.)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함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배우자, 세대주”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한다.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등 본인”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영문”을 “로마자 성명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자전송”을 “문자전송 등”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위해”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다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의2 중 “문자전송”을 “문자전송 등”으로 한다.

제47조제5항 본문 중 “기관”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원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영문”을 “한글 성명과 로마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0조, 제41조의2, 제49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외체류 [] 신고서 [] 신고 철회서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현 주소		(시·도)		(시·군·구)	
※ 해외체류신고(철회)자 (총 명)					
해외체류 신고(철회)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연락처)
해외체류주소		(국가명)	(도시명)	(연락처)	
해외체류시 숙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 아래 사항은 세대주가 출국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남은 세대	남은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연락처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 해외체류신고 []) 해외체류신고 철회)를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출국하려는 사람과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 해외체류 신고 [] 해외체류신고 철회)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 이후 최초로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하지 않는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해외체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해외체류'로 구분되어 신고된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3.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도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국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4.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는 '위임장' 칸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출국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명부 구성 및 세대주 확인 등을 위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5.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해외체류신고(철회)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통보내역

◦ 신고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 통보내용

성명	통보내용

※ 통보내용란에는 1) 주민등록번호 정정, 2) 신규(출생)등록, 3) 성명 정정 4) 주민등록번호 변경
5) 그 외 정정 또는 말소사항에 따른 해당내용을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주민등록번호 정정

성명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	정정 후 주민등록번호

2) 신규(출생)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3) 성명 정정

정정 전 성명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명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5) 그 외 정정 또는 말소 사항

성명	정정 전	정정 후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작성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 신고 대상자 (총 명)

1. '전입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2.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자의 세대주와 전입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예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3. 미성년자 전입자의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입자 확인 (서명 또는 인)
1				
2				
3				
4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입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가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법정대리인 동의서(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	--	-----------------	-----------------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9.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정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별도로 정정신고(세대주 변경)를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고,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동거인'으로 기재합니다.
6. 세대주 또는 신고인의 '연락처'는 전입신고된 내용에 대한 관할 이·통장의 사후확인 등에 이용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입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하며, 연락처 기재에 희망하지 않는 전입자의 경우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자 확인(서명 또는 인)과 함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항에 대한 전입자 본인 확인(문자메시지 링크 전송)을 위해 전입자 연락처 기입이 필요하며, 수집된 연락처는 전입자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폐기됩니다.
8.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첨부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3.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정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별도로 정정신고(세대주 변경)를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고,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전입재전입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전입지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동거인'으로 기재합니다.
6.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7.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商用),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8. 세대주 또는 신고인의 '연락처'는 전입신고된 내용에 대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하며, 연락처 기재를 희망하지 않는 전입자의 경우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자 확인(서명 또는 인)과 함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항에 대한 전입자 본인 확인(문자메시지 링크 전송)을 위해 전입자 연락처 기입이 필요하며, 수집된 연락처는 전입자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폐기됩니다.
10. 전입 주소가 다가가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것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략)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② ----- -----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 ⑤ (생략)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외국인등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u>	⑥ ----- ----- ----- ----- ----- ----- <u>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⑦ ~ ⑩ (생 략)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
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
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
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
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
한다.

② ~ ⑦ (생 략)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
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
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
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
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 로마자 성명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문자전송 등-----

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3조(전입신고)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생략)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군·자치구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입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 ⑧ (생략)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할 수 있다.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

----- 문자전송 등-----
-----.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기관 -----

-----.

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⑪ (생략)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

----. 다만, 신청인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원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7